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1. 9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1.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박명호)

가. 제안이유

○ 새차와 현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시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안 제42조)
-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른 용어 및 관련사항 등을 개정함(안 제45조 내지 제57조)
- 담배소비세의 제1종 킬런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7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주행세와 관련하여 자동차세가 감소하였는데 세입부분 증감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겠습니까?	○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행세 때문에 세수는 증가하지 않았는지? 또한 자동차의 주유량에 따라 주행세가 지급되는지?	○ 전체는 증가되었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에 따라 11.5%를 안배하여 줍니다. 정유사 → 울산광역시 → 시·군 이러한 절차로 지급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7호
의결년월일	2001. 1. 19 (제84회)

제출년월일 : 2001. 1.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시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안 제42조)
-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른 용어 및 관련사항 등을 개정함(안 제45조 내지 제57조)
-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궤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70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의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하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에서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leq n \leq 12$)

제38조제1항 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로 하고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2조 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5절의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조제2항 중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를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3항 중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을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으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를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4항 중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하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를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7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법 제45조 내지"를 "제46조 및"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2조의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 중 "농지세는 중간에납이나"를 "농업소득세는"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농지조사위원회설치·운영 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의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를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로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시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의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과 본문 중 "농지조사위원회"를 각각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한다.

제59조 중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6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영 제194조의14"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서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94조 중 “제20조”를 “제32조와 제86조”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이미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세목) ①(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u>(농지세)</u> 6.~8. (생략)	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 ②..... 1.~4. (현행과 같음) 5. <u>농업소득세</u> 6.~8. (현행과 같음)
제19조(납세의무자) ①(생략) ②소득환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u>농지세</u> 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 <u>농업소득세</u>
제21조(세율) ①(생략) ②소득환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세율) ①(현행과 같음) ②.....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 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④(생략)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신설)

2.~6.(생략)

1.
2.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

제22조(신고납부) ①.....

4월.....

1월.....

(단서 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1.(현행과 같음)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에서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leq n \leq 12$)

2.~6.(현행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납기표 생략)

②~③(생략)

제40조(일할계산시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신설)

제5절 농 지 세

제45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

.....

.....

.....

.....

(납기표 생략)

②~③(생략)

제40조(일할계산시세액계산방법) 제39조.....

.....

.....

.....

.....

제42조(세율) ①.....

.....1,000분의 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5절 농업소득세

제45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

.....

.....농업소득금액.....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농조합 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농업소득금액.....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농업소득.....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농업소득세.....농업소득금액.....

제47조(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농업소득세.....

(삭제)

제49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51조(과세표준)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9조(감면결정 통지)법 제46조 및.....
.....
.....
.....

제50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
.....농업소득.....
...

②.....
.....농업소득.....농업소득세.....
.....

③.....
.....농업소득.....
.....농업소득세.....

제51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제52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생략)

제53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중간에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 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수(15일 이상의 입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2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

제53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
.....
.....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

(삭제)

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에납 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5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에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6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 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의 실비변상) 농지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0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쥘런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쥘런은 20개비당 40원

나. ~라. (생략)

제79조(납세의무자) ①(생략)

제55조(수시부과)
.....농업소득세는.....
.....
.....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조사위원회.....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실비변상) 농업소득조사위원회.....
.....
.....

제59조(과세표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
의.....
.....

제70조(세율) ①.....
.....

1.

가.510원

.....
.....

나. ~라.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
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 (생략)

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
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
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
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

제80조(과세표준) ①(생략)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
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3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
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의 것을 말한다.

1. ~4. (생략)

제9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②.....
.....
.....

1.~5. (현행과 같음)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
한 도시개발사업.....
.....
.....
.....
.....
.....
.....

제80조(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

②.....별
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
.....
.....

제83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제3항.....
.....
.....
.....

1. ~4. (현행과 같음)

제9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의 규

제9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부 칙

①(생략)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3. (생략)

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9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법 제37조.....
.....
.....

부 칙

①(생략)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1. 2001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
.....

2.~3. (현행과 같음)